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 법 I

응시번호

성 명

<제 1 문>

甲은 2015. 3. 25. 乙로부터 乙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乙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원, 2015. 4. 25. 중도금 4억 원, 2015. 5. 25. 잔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각 문항은 독립된 것임)

1. 甲은 乙에게 대금을 완납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丙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X토지에 관하여는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한편 Y건물은 무허가 미등기건물이어서 甲은 무허가건물관리대상상의 소유자 명의를 丙으로 변경해 주었다. 그런데 甲과 乙 사이의 매매와 관련하여 乙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자,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乙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 대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가? (15점)
2. 乙은 2015. 5. 1. 丁에게 5억 원의 잔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5. 5. 3. 甲에게 도달되었다. 그 후 甲은 2015. 5. 5. 乙에게 변제기를 2015. 5. 25.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여하였다. 丁이 2015. 5. 30. 甲에게 양수금 청구를 하자, 甲은 乙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잔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甲의 상계항변의 타당성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3. 위 매매계약에서 중도금과 잔금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戊에게 甲이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戊의 청구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乙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 사실을 알지 못하는 己와 또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甲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乙에 대하여는 계약금 1억 원의 반환을, 戊에 대하여는 중도금 4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 甲의 계약해제가 「민법」 제541조에도 불구하고 적법한지 여부와 甲의 乙 및 戊에 대한 금원청구의 당부를 논하시오. (15점)
4. 甲은 위 매매계약에서 잔금 5억 원 중 4억 원에 대하여는 乙이 A에게 부담하고 있던 X토지에 경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변제기 2016. 7. 25.)를 인수하기로 하고, 잔금에서 위 4억 원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1억 원을 잔금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2015. 5. 25. 1억 원을 乙에게 지급하고, 2015. 6. 30.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과 乙은 2000. 1. 1.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서 丙이 2001. 1. 1. 출생하였다. 甲은 2001. 12. 31. 가출하여 乙과 별거하였다. 甲은 가출 이후 乙에게 재정적 지원을 일절 하지 않다가 2005. 1.부터 이혼할 때까지 양육비 명목으로 乙에게 매월 5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乙은 2015. 3. 3. 甲과 협의이혼하였다. 당시 乙은 甲의 요구에 따라 재산분할 명목으로 甲에게 금 1억 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각 문항은 독립된 것임)

1. 乙은 2016. 6. 20. 甲을 상대로 법원에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12점)
2. 乙은 甲이 2002. 1. 1.부터 이혼할 때까지 배우자인 자신을 전혀 부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2016. 6. 20. 甲을 상대로 법원에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8점)
3. 甲과 乙은 협의이혼 당시 甲이 乙에게 丙의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16. 6. 20. 현재 甲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1,000만 원에 이르렀다면, 같은 날 乙은 위 양육비 채권으로 甲의 위 1억 원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 (10점)

〈제2문의 2〉

甲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乙은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甲은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었고, 계약 당시 丙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각 문항은 독립된 것임)

1. 甲은 乙에게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게 된 후, X토지의 시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자 매매계약을 철회하였다. 丙이 매매계약을 철회할 당시에 丙은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 甲은 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丙은 매매계약의 철회를 이유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丙의 주장은 타당한가? (10점)
2. 甲은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추인하기 전에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甲은 乙의 丙에 대한 매도행위를 추인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丁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丁의 청구는 타당한가?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